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45
----------	-----

2017. 7. 14. (금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이종욱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7년 6월 26일

다. 회부일자: 2017년 6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17년 7월 5일

(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종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내 초등학교의 수상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수상위기상황 시 자기구조법 등 생존수영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생존수영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(안 제3조)
- 생존수영교육 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생존수영교육 활성화(안 제5조)
-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(안 제6조)
- 생존수영교육 전문성 확보(안 제7조)
- 생존수영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예산지원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덕환)

- 본 제정조례안 초등학교학생 수상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자기구조법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 초등학교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,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·교육내용 및 방법·교육 시설 확보·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교육 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한 것은 생존수영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며

-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과 간이수영시설 등 생존수영 교육시설 확보와 생존수영교육 지도자의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은 생존수영교육활동의 실질적 운영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안전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인식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수영실기교육과 수상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.
- 이에 따라 교육부도 수영실기교육을 2018년까지 초등 3~6학년 학생으로 확대 운영하고 수영실기교육 확대에 따른 수영장 확보 및 연차적 건립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, 2016년 7월 초등 수영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교사 양성연수를 추진하고 있음
-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볼 때, 초등학생들의 수상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수상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생존수영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할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.
- 다만,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생존수영이 실효성 있게 시행 되기 위해서는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 등 교육시설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, 무엇보다도 지역별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행·재정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두 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건 요 지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○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초등학교 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생존수영교육”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자기구조법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은 초등학교 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초등학교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진흥계획(이하 “진흥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
2. 생존수영교육 내용 및 방법
3.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
4. 생존수영교육 담당 지도자 확보 및 연수
5.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6.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생존수영교육 활성화) 교육감과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업시수를 편성·운영하고, 교육대상자가 생존수영교육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생존수영교육시설 확보)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과 간이수영시설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도내 수영장 설치 및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 시·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7조(생존수영교육 전문성 확보)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지도자를 확보하고, 지도자의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안전조치의 의무)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안전조치를 확립하여야 한다.

제9조(예산지원)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진흥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학교체육진흥법

제3조(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 시책의 수립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,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,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3.3.23.>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,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3.23.>

제15조(경비의 지원 및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(지역사회와 협력)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5조(전문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.17.>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.17.>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
3. 고등학교 · 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□ 유아교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유아“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치원“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·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(안) 비 용 추 계 서

1. 사업개요

- 초등학생의 생존 수영 교육 실시
- 연간 10시간 이상 실습 중심의 교육 실시

2. 비용 발생 요인(1인당 50,000원 기준)

- 시설이용료(수영장 사용)
- 교통비(학생 이동)
- 강사비(전문강사에 의한 교육)

3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근거 :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
- 추계대상 : 2017년(3~5학년), 2018년~2021년(3~6학년)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백만원, 명)

구 분	합 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합 계	12,791	1,080	2,889	2,934	2,924	2,964
교 육	12,791	1,080	2,889	2,934	2,924	2,964
학생수(3~6학년)			57,786	58,694	58,492	59,289

다. 재원조달방안 : 5(자체) : 5(특교)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교육국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	계
세 입		1,080,000	2,889,000	2,934,000	2,924,000	2,964,000	12,791,000
이전수입		1,080,000	2,889,000	2,934,000	2,924,000	2,964,000	12,791,000
세 출		1,080,000	2,889,000	2,934,000	2,924,000	2,964,000	12,791,000
교 육		1,080,000	2,889,000	2,934,000	2,924,000	2,964,000	12,791,000
재원 조달		1,080,000	2,889,000	2,934,000	2,924,000	2,964,000	12,791,000
의존 재원	소 계	150,000	1,444,500	1,467,000	1,462,000	1,482,225	6,005,725
	특별교부금	150,000	1,444,500	1,467,000	1,462,000	1,482,225	6,005,725
자체 재원	소 계	930,000	1,444,500	1,467,000	1,462,000	1,482,225	6,785,725
	교육비 특별회계	930,000	1,444,500	1,467,000	1,462,000	1,482,225	6,785,725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기 타 (차입금, 만자, 예비비 등)							